

의안번호	제 912 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11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기창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1년 11월 일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김기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2
----------	-----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일
발 의 자 : 김기창, 서동학, 박우양,
연철흙, 전원표, 황규철,
송미애, 이상식

1. 제안이유

급식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방관서에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방 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소방 본연의 업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 :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원 근로자, 의무소방원, 사회복지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환경 조성
2.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8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② 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119안전센터 및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9조(119지역대) ① 소방서장은 해당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30.]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소방정대, 119지역대 등(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소방관 부실식단 논란』 언론보도(2021.01.29. / 국민일보)

2. 비용발생 요인

- 소방기관 급식시설 조리인력에 대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발생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 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취사인력의 확보와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 4조 제1항~2항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환경 조성
 2.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소방공무원 건강증진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

- 소방기관 급식시설(46개소) 연차적 조리인력(1명) 공무원 채용
- (공무직 1호봉 기준 / 1인당) 2,859천원 × 12개월 = 34,308천원
- 조리인력 공무원 채용 우선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대 상	본부, 안전체험관 및 소방서 직할 안전센터 (14개소)	외곽 안전센터 (14개소)	외곽 안전센터 및 소방정대 (14개소)	잔여 안전센터 (4개소)

* (편성 기준) 소방서 근무인원(현원) 고려 우선순위 선정

- 소방기관 급식시설 운영물품 구매 및 정비 등 예산소요

나. 추계 결과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약 65.9억원 소요

○ 조리인력 공무원 채용 : 약 64억원(호봉 승급 및 물가상승률 1.4% 반영)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세출	공무직 인건비	480,312	979,524	1,497,138	1,682,024	1,765,351	6,404,349
비 고		1호봉(14명)	1호봉(14명) 2호봉(14명)	1호봉(14명) 2호봉(14명) 3호봉(14명)	1호봉(4명) 2호봉(14명) 3호봉(14명) 4호봉(14명)	2호봉(4명) 3호봉(14명) 4호봉(14명) 5호봉(14명)	

○ 식당 운영 관련 자산 및 물품 취득 : 약 1.9억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세출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165	38,165	38,165	38,165	38,165	190,825
비 고		* 산출근거 : 2017년 ~ 2021년도 급식시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평균 지원금액 - 190,825천원 ÷ 5년 = 38,165천원(1년간)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도비(100%)로 공무원인건비 및 식당 물품구매 소요재원 조달

○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 조리인력 공무원 채용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518,477	1,017,689	1,535,303	1,720,189	1,803,516	6,595,174
공무직인건비		480,312	979,524	1,497,138	1,682,024	1,765,351	6,404,349
식당 물품구매		38,165	38,165	38,165	38,165	38,165	190,825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518,477	1,017,689	1,535,303	1,720,189	1,803,516	6,595,174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일반도비	518,477	1,017,689	1,535,303	1,720,189	1,803,516	6,595,174